

##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
| <input type="checkbox"/>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전문기관 | <input type="checkbox"/> 재정사업심층평가 전문기관     |
| <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재조사 전문기관      |
| <input type="checkbox"/> 기금운용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input type="checkbox"/> 부담금운용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input type="checkbox"/> 보조사업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input type="checkbox"/> 복권기금사업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38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의 실적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 절차

